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. 8. 31 선고 2017가단1645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변론 종결2018. 8. 17.

판결 선고2018. 8. 31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은 13분의 3 지분에 관하여, 피고 C, D, E, F, G는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, 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

나.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박지원

별지